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2
----------	----

제출일자 : 2010. 7.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폐지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069호, 2006.12.20)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로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등 6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폐지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3.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안 제1조)
- 나.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2조)
- 다.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폐지(안 제3조)

- 라.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4조)
- 마.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폐지
(안 제5조)
- 바.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별첨
- 나.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자치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략
- 다.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대상
- 라. 교육규제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폐지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제5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제6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